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사 회 복 지 사 등 의 처 우 및 지 위
향 상 을 위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892호, 2024. 1. 2. 공포, 2024. 7. 3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는 사무실, 상담실 등을 갖추고, 권익지원센터의 장은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권익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기준 신설(안 제4조의7)
- 나.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업무를 공공기관,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협의회, 그 밖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의8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진행중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

대통령령 제 호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7 및 제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7(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·운영 등) ① 법 제3조의 3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(이하 “권익지원센터”라 한다)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, 상담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권익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운영방침 및 업무분장

2. 운영시간

3. 상담자 관리 방법

4. 재무·회계 등의 장부 작성 및 비치

5.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권익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,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의8(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2.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협의회
 3.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-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고시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		제4조의7(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·운영 등) ① 법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(이하 “권익지원센터”라 한다)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, 상담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. ② 권익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. 1. 운영방침 및 업무분장 2. 운영시간 3. 상담자 관리 방법 4. 재무·회계 등의 장부 작성 및 비치 5.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권익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, 관련 기관·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4조의8(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협의회
3.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고시해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014